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1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종무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설명자: 총무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부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연합협의회 설립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을 가입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인용 법령, 용어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규정에 연합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13조 및 제16조에서는 불필요한 상위법령과의 중복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3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 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 2023년 11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부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148
----------	---------

제출년월일 : 2023. 11. 03.

제출자 : 달서구청장
(총무과장)

1. 개정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조례의 법령 부합성 제고

2. 주요내용

- 가. 연합협의회 설립 금지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항)
- 나.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 정비(안 제3조제1항)

-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을 가입제외 대상에서 삭제
- 그 밖에 인용 법령, 용어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다. 협의회 규정에 연합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라. 불필요한 상위법령과의 중복 조문 삭제(안 제13조 및 제16조)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 라. 행정규제 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 마.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바.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사. 입법예고(2023. 10. 23.~10. 30.)결과: 의견 없음

아.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업무중”을 “업무 중”으로 한다.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자치법규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주된 업무의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물품관리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조사·유선교환 등 기밀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및 부서의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제4조제2항 중 “당해 기관에 2”를 “해당 기관에 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3항에 따른”으로, “의하되”를 “따르되”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관장”을 “설립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 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원직장 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1. ─────────── 제102조에 따른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 ·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 ·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관련 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 · 경리 · 물품출납업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 ·

조사 · 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부서의 비밀업무를 관리 · 담당하는 공무원

6. 보안 ·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 · 자치법규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주된 업무의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예산 · 경리 · 물품출납 업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물품 관리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 ·

조사 · 유선교환 등 기밀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및 부서의 비밀업무를 관리 · 담당하는 공무원

6. 보안 ·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생략)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 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삭 제>

② 제2조제1항에 따라 -----
----- 해당 -----

----- 업무 중 -----

----- . -----
----- .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기관에 둘 -----

----- .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

----- 따르되 -----
----- 제5조에 따른 -----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
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신설>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 ③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 전보 ·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④ 제3항에 따른

따라

⑤ · ⑥ (혁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규정) ----- ----- 각 호 ----- -----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연합 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 ③

(현행과 같은)

(4) _____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④ (생 략)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

----- 해당 -----

----- . -----

⑤ 제4항에 따른 -----

----- . -----

⑥ -----

----- 해당 -----

----- . -----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

----- 10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각 호 -----

----- . -----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3개월 -----

하지 아니하다.

-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④ (생략)
-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생략)
-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
----- 소속공무원 중
----- 제4조
에 따라 -----

-----.
② 제1항에 따라 -----

-----.
③ ----- 제2항에 따른 -----

-----.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따라
-----.
⑥ (현행과 같음)
⑦ -----

--- 각 호---

---.
-----.

<p>1. (생략)</p> <p>2. 출석한 <u>기관장</u>(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p> <p>3. (생략)</p> <p>4. <u>기타</u> 토의사항</p>	<p>1. (현행과 같음)</p> <p>2. ----- <u>설립기관의 장</u>-----</p> <p>-----</p> <p>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u> ---</p>
<p>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 ② (생략)</p> <p>③ 설립기관의 장은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2항에 따라</u> -----</p> <p>-----</p> <p>-----</p> <p>-----</p> <p>-----</p> <p>-----</p> <p>-----</p> <p>-----</p>
<p>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p> <p><u>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u> <u>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u></p>	<p><삭 제></p>
<p>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u>당해</u> 기관의 회의장소 ·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p> <p>-----</p> <p>----- <u>해당</u> -----</p> <p>-----</p>
<p>제16조(불리한 조치금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p>	<p><삭 제></p>

【 관계법령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법원 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5.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1. 삭제 <2022. 4. 26.>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이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등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등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행정규칙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주된 업무의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물품관리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교·군사·감사·조사·수사·검찰사무·출입국관리·유선교환 등 기밀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청사관리를 관장하는 기관이나 부서, 교정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을 위해 특정인이나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2.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